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 106번지 1호”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위치(제20조 관련)

구 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 재 지	비 고
분 원	생활체협의 집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87-1	
	대성의 집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85	
	대천임해수련원	충청남도 보령시 신후동 2055	
야외교육장	모현야영수련장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산 25-1	
	퇴촌야영수련장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4	
	천마의 집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1-1	
	축령산야영수련장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133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1
------	-----

2003년 3월 19일
 보건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3년 3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2003년 3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이봉화)

-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 1.10) 및 동조례시행규칙 개정(2003. 1.15)으로 인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명(보건복지국장·시정기획관)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결산기한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당연직 비상임이사중 시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함(안 제9조 제1항)
 - 보건복지국장·시정기획관→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
 -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함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

-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비상임이사 직명을 변경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현재 ‘보건복지국장·시정기획관’을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으로 하는 것은 시장의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 것

이나 조례 관련조항을 개인적 판단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 특히 ‘시의 공무원’이라는 규정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상임이사 선임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어 자칫 병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오류를 발생시킬 소지도 있으므로 비상임이사에 대한 자격 규정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국장 등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결산완료 기한의 단축에 관한 사항은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2003년 3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요컨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나,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관한 조항은 자격조건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미구성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참석위원 전원일치)

가. 수정이유

- 비상임이사의 자격조건 중 시의 공무원이라는 규정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국장 등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이라는 규정을 “당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으로 수정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을 “당해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시의 보건복지국장·시정기획관”을 “당해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이상의 공무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으로 한다.
제17조중 “3월내”를 “2월 이내”로 한다.